

「계약직원 취업 규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9. 23. 개정 판 (시행 2019. 7. 1.) → 2020. 2. 24. 개정 판 (시행 2020. 1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04/compare?from=932&to=95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21:5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연차유급휴가)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<u>다만,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주며,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	제35조(연차유급휴가)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<u>1개월</u>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<u>〈개정 2020-02-24〉</u> <u>④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.〈신설 2020-02-24〉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계약직원 취업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5조(연차유급휴가)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
-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-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항에 의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
- ④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